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해양 폐기물 및 해양 오염 퇴적물
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사업 추진을 위한 해양오염퇴적물 수거·처리 및 사후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관리 권한을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,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권한의 일부를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함(제16조제6호 신설)

나.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후 해양환경 모니터링 권한의 일부를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함(제16조제7호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 등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 략

라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발주, 공정관리 등 업무
7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오염 여부 등 측정사업의 발주, 공정관리 등 업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6조(업무의 위탁) 해양수산 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해양환경 관리법」 제96조제1항에 따라 설 립된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16조(업무의 위탁)_____ _____ _____ _____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 염퇴적물 정화사업의 발주, 공 정관리 등 업무 7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오염 여부 등 측정사업의 발주, 공정 관리 등 업무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307